

접수일		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(취득·상실) 신고서				결재		담당	차장	부장	지사장
일련번호		REPORT ON GAIN/LOSS OF FAMILY MEMBER ELIGIBILITY FO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PLAN						전결			
사업장(기관)		기업사		성명							
① 기호				③ 성명							
② 명칭				④ 주민등록번호							
⑤		⑦ 주민등록번호		⑧ 취득(상실)년월일		⑨ 취득(상실)부호		⑩ 장애인·국가유공자 종별부호, 등급, 등급		⑪ 외국인 외국인 국적	
관계성명										추가발급 코드	
피부양자											

증만
매수

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 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부양자 자격 취득(상실) 사항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: (서명 또는 인)

국민건강보험공단 용산지사장 귀하

주: 1. 사망으로 인한 자격상실 신고인 경우에는 뒤쪽의 장제비지급청구서도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. 진한부분은 작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

장제비 지급 청구서										처리기간 7 일
1. 증 번호 (사업장기호)	성 명	주민등록번호	성 명	주민등록번호	관 계 구 분					
② 가입자 (세대주)			③ 사 망 자		1	2				
④ 사망일	⑤ 사망구분	⑥ 사망원인	지급금액			지급 의 퇴인				
	1. 병 사	상 명 명	십	만	천	백				
	2. 사고사	분 류 기 호	십	만	천	십				
⑦ 사고경위										
⑧ 거래금융기관명	⑨ 예금계좌번호	⑩ 예금주	성 명		⑪ 주민등록번호					
			사 망 자 외 의							

1. 건강보험증 (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발급한 건강보험증을 포함합니다.)
2.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망진단서, 사체검안서, 사망사실이 기록된 호적등본,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기타 사망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중 1 부.
 ※ ⑪: 가입자와 예금주가 다를 경우에만 기재합니다.

① ~ ② 사업장 및 기관(학교)의 사업장기호, 명칭을 기재합니다. 다만, 종전에 직장의료보험조합에서 발급한 구의료보험증을 소지한 경우는 '①기호'란에 '조합기호' 및 '증번호'를 기재합니다.

③ ~ ④ 직장가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. (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.)

⑤ 가입자와의 관계를 기재합니다 (단, 상실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마십시오).
 ※ 배우자, 부모, 조부모, 자녀, 손 이하, 형제, 자매, 처부모, 시부모, 사위 · 자부, 증조부모, 제자, 생자녀, 생부모, 시조부모, 시처조부모, 손 사위, 손 자부 등

⑥ ~ ⑧ 신고대상 피부양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취득(상실)년 · 월 · 일을 기재합니다. (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.)
 취득(상실)번호를 기재합니다.
 ※ 취득사유 <부호>: 출생 <03>, 의료보호대상에서 제외 <04>, 직장에서 퇴직 <05>, 다른가입자의 피부양자였던 경우 <06>, 지역가입자에서 피부양자가 된 경우 <07>
 ※ 상실사유 <부호>: 사망 <02>, 의료보호대상자로 책정 <04>, 국가유공자로 의료보호적용 <10>, 직권말소 <14>, 국적상실 <17>, 외국인(영주권자) 출국 <18>, 이민출국 <19>, 행방불명 <21>

⑨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일 경우 장애 종별부호 및 등급, 등록일을 기재하고,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을 기재합니다 (단, 상실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마십시오).
 ※ 장애종별 <부호>: 지체 장애인 <1>, 뇌병변 장애인 <2>, 시각 장애인 <3>, 청각 장애인 <4>, 언어 장애인 <5>, 정신 지체인 <6>, 발달 장애인 <7>, 정신 장애인 <8>, 신장 장애인 <9>, 심장 장애인 <10>, 심장 장애인 <10>, 골가 유공자 <19>

⑩ ~ ⑪
1. 건강보험증 (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발급한 건강보험증을 포함 합니다.)
2. 주민등록표등본(주민등록표등본만으로는 당해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호적등본) 1부, 다만, 자격상실신고의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합니다.
3. 장애인 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· 제6호 · 제10호 · 제12호 · 제14호에 규정된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.